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471 |
|----------|------|

2016. 12. 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 가. 제안이유
 - 서울 공공한옥 중 역사가옥에 해당하는 문화재가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각 역사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전시콘텐츠 기획, 운영 및 지역사회와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일부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 2) 위탁개요
 - 대상한옥 : 흥건익 가옥(시 민속문화재 제 33호), 배림 가옥(등록문화재 제 85호)
 - 위탁기간 : 3년(2017.3 ~ 2020.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안) : 연 549.1백만원

3) 주요 위탁내용

- 흥건익 가옥
 - 지역 인물, 지역에 대한 자료, 주민생활민속품 자료 기록화 등 아카이빙 전시 조성 및 근현대기 한옥의 변화 전시공간체험 운영
 - 가옥의 정체성에 맞는 시민(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옥 및 지역 해설 등 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 배림 가옥
 - 가옥 관련 역사인물(배림, 송석하) 생애별 전시 조성 및 운영
 - 서화 전문 전시공간으로 전통서화 예술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 관련 예술가(단체) 교류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 사무국 운영 및 활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4) 추진근거

-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 방침(16.3.10)
- 역사가옥 활용 기본계획 방침(16.4.14)
-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16.9.28)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 36조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5) 필요성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한옥은 역사가옥으로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문화재 한옥으로서 공공성 증대 필요
- 흥건익 가옥은 지역의 장소적 유산 및 가옥이 보여주는 근현대기 한옥의 변화양상에 대한 전시와 주민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 필요
- 배림 가옥은 동양화가 배림의 콘텐츠를 토대로, 서화전시공간으로서 전문적 운영 필요
- 역사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전시콘텐츠 기획, 운영 및 지역성을 담은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가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 통해 공공한옥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만족도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서울 공공한옥1(역사가옥 2개소)의 사무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참고로 이 동의안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이 공공한옥을 활용한 민간 위탁 방식이며,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가결한바 있음.
- 시장이 이번에 일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한옥은 “홍건의 가옥”과 “배림 가옥”으로, 각각의 한옥은 시 민속 문화재 제33호 및 등록 문화재 제85호로 등재되어 있음.
- ‘홍건의 가옥’은 2011년 12월 매입하여 2013년 5월 민속 문화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후 개보수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임시개방 중이고, ‘배림 가옥’은 2001년 3월 매입하여 200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촌한옥체험관(게스트하우스)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정비 중에 있음
- 향후 홍건의 가옥은 지역의 장소적 유산 및 가옥이 보여주는 근현대기 한옥의 변화양상에 대한 전시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배림가옥은 동양화와 같은 서화전시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임.

| 명칭 | 위치 | 규모(m ²) | | 역사가옥 개요 | 비고 |
|--|--------------|---------------------|--------|---|---|
| | | 토지 | 건물 | | |
| 홍건의 가옥 ※ 시 민속문화재 제 33호('13.5.16) | 종로구 필운동 88-1 | 740.5 | 142.14 | - 건축년도: 1934년~1936년 신축 - 건축주: 홍건의 - 홍건익이 신축한 근대한옥의 건축사적 가치로 문화재 지정 - 주요시설: 대문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채 | - '11년 매입 - '15.9월 공사 완료 - '16.9월 임시개방중 |
| 배림 가옥 ※ 등록문화재 제85호('04.9) | 종로구 계동 72 | 273.4 | 128.93 | - 건축년도: 1940년경 신축 - 근대 실경산수화를 그렸던 제당 ‘배림’이 1959년부터 1968년 (작고시)까지 작업하였던 공간 - 주요시설: 대문채, 안채, 사랑채 | - '01년 매입 - '03~'16까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 현재 정비중 |



1) ‘서울 공공한옥’이란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 이 동의안은 컨설팅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역사가옥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한옥 문화재로서 공공성을 제고시키고 역사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한옥(홍건익 가옥, 배림 가옥)의 활용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²⁾을 시행하였으며, ‘공공한옥이 공방(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편중되어 있어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사가옥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문화재 한옥으로서의 공공성 증대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역사가옥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역사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백인제 가옥” 및 “최순우 옛집”, “고희동 가옥”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이번 ‘공공한옥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동의안과 같이 시설관리 및 정책업무는 시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전시관 조성 및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만 위탁하는 방식임.
 - 부족한 인력의 충원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발굴·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음.
- 또한, 이 위탁동의안과 관련한 한옥 문화재의 위탁에 관한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현재 서울시 공공한옥 중 기존 위탁협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곳은 10개소 이상으로, 향후 공공한옥의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이 필요할 것임.

2) 용역명: “역사가옥(홍건익 가옥, 배림 가옥) 활용 및 운영 컨설팅”
 용역기간/업체: ‘16.5.4~’16.9.4 /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 민간위탁 후 배치되는 상근 인력은 흥건의 가옥 5명, 배림 가옥은 4명으로, 주택건축국 한옥담당부서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간접적 충원효과와 전문성 확보의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음. 다만, 이번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은 총 5억 4,91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이번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3억 58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이 예산액은 흥건의 가옥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용(3억 4,910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예산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471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 공공한옥 중 역사가옥에 해당하는 문화재가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나. 각 역사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전시콘텐츠 기획, 운영 및 지역사회와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일부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나. 위탁개요

- 대상한옥 : 흥건익 가옥(시 민속문화재 제 33호), 배림 가옥(등록문화재 제 85호)
- 위탁기간 : 3년(2017.3. ~ 2020. 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안) : 연 549.1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흥건익 가옥

- 지역 인물, 지역에 대한 자료, 주민생활민속품 자료 기록화 등 아카이빙 전시 조성 및 근현대기 한옥의 변화 전시공간체험 운영
- 가옥의 정체성에 맞는 시민(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옥 및 지역 해설 등 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 배림 가옥

- 가옥 관련 역사인물(배림, 송석하) 생애별 전시 조성 및 운영
- 서화 전문 전시공간으로 전통서화 예술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 관련 예술가(단체) 교류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 사무국 운영 및 활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라. 추진근거

-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 방침(16.3.10)
- 역사가옥 활용 기본계획 방침(16.4.14)
-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16.9.28)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 36조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마. 필요성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한옥은 역사가옥으로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문화재 한옥으로서 공공성 증대 필요

- 흥건의 가옥은 지역의 장소적 유산 및 가옥이 보여주는 근현대기 한옥의 변화양상에 대한 전시와 주민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 필요
- 배림 가옥은 동양화가 배림의 콘텐츠를 토대로, 서화전시공간으로서 전문적 운영 필요
- 역사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전시콘텐츠 기획, 운영 및 지역성을 담은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가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 통해 공공한옥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만족도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한옥조성과 한옥문화팀 강승희(☎2133-5582)